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정이유

가. 「과학기술기본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방침을 세우고
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 안 제1조, 제4조
- 목적 :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책무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진흥시책의 적극적 추진
나. 과학기술진흥사업 : 안 제5조 ~ 제8조
- 과학기술진흥사업, 과학기술인력 육성사업,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등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산업발전법」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8항 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수도법」 제17조
- 「산업기술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조, 제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 참고자료 : 경상북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 및 뷰티기기의 제조·개발 산업

나. 이·미용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4.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5. “물산업”이란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나. 장치·기기 및 약품의 제조·판매

다. 연구·기술개발

라. 교육 및 컨설팅

6.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7.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5G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인재 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사업

제6조(인력 육성) 시장은 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3. 금형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인력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 확산)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 개최

2. 국내·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3. 강좌 및 학술발표회 주관

4. 생활과학교실 운영

5. 과학동호회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국방벤처센터,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의 경비보조,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한 바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지원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관련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업을 말한다.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품·소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업기술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 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4.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6. 「전기사업법」, 「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7.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소관 실·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우 춘
	담 당	장 응 재
	담 당 자	윤 희 정 (480-6152)